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3. 21.
제 안 자 : 오장세의원 외

▢ 수정 이유

○ 동 조례안은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조례안중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 정리

▢ 수정 주요내용

○ 부패유발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권자의 범위 확대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안 제2조)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 안 제4조중 "내지 별지 제3호서식"과 제1호중 "대표자 및"을 삭제
- 안 제6조내지 제7조중 "대표자"를 삭제
- 안 별지 제1호서식중 "청구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서식 하단 첨부서류중 "1. 청구인명부(50인 이상 연서)"를 삭제하고 "2"를 "1"로 함.
- 안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일부 중복된 내용 삭제

- 안 제5조제2항의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자문사항은 안 제3조의 청구대상과 중복으로 삭제 (안 제5조제2항)

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1 호

교 육 사 회 위 원 회 회 의 록 (부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4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준호 의원 발의) 6면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면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17면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기동 의원 발의) 20면